읍·면·동체육회 규정

2018년 월 일 이사회 승인 제정

제 1 장　총　칙

제 1 조(근거 및 명칭) ① 이 규정은 남원시체육회 규약 제5조, 제34조,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회원으로 가입이 승인된 회원종목단체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.

제 2 조(목적 및 지위) ① 남원시○○읍면동체육회(이하 “본회 “)는 시민체육을 널리 보급하여 시민체력을 향상케 하며, 건전한 여가선용과 명랑한 기풍을 진작하는 한편 운동선수 및 그 단체를 지원・육성하고 우수한 선수를 양성하여 남원시 및 국위선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3 조(소재지 등) ① 본회 소재지는 남원시 ○○○에 둔다

제 4 조(사업) ① 본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과 활동을 수행한다.

1. 해당 종목에 관한 기본방침의 심의・결정
2. 해당 종목 대회에 관한 자문 및 건의
3. 해당 종목에 관한 대회의 개최 및 참가
4. 해당 종목의 지도와 지원
5. 해당 종목 대회의 주최 및 주관
6. 해당 종목 경기기술의 연구 및 향상
7. 해당 종목의 선수 및 심판, 운영요원 등의 양성
8. 해당 종목의 경기시설・장비의 개발・개량 및 이와 관련된 공인
9. 해당 종목의 동호인 조직 및 스포츠클럽 육성 지원
10. 해당 종목의 생활체육프로그램 개발・보급
11. 해당 종목단체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조달을 위한 수익사업
12. 그 밖의 해당 종목 진흥 및 종목단체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

② 본회는 제1항 제8호의 공인과 관련하여 국제공인 규정을 벗어난 공인요건을 신설하거나 특정업체의 제품사용을 강요해서는 안된다.

제 2 장　조　직

제 5 조(조직) ① 본회는 시체육회의 대의원총회 의결을 거쳐 회원단체로 가입할 수 있다.
② 본회는 제1항에 따른 절차를 거친 후 시체육회의 회원단체로 가입을 하여야 한다.

③ 본회는 정기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4조의 목적사업 수행을 위한 도규모 연맹체를 설치할 수 없다.
④ 본회에 대한 권리와 의무는 남원시체육회 규약 제7조를 준용한다.

제 3 장 운영위원회

제7조(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) ① 본회의 위원회는 다음과 같다.
1. 읍면동체육회에 등록한 팀(각 클럽) 단체의 장

② 본 회의 운영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.
1. 회원단체의 해산 및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
2. 등록한 팀의 회원가입 및 제명
3. 종목단체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
4. 사업결과 및 결산에 관한 사항
5. 기타 중요사항

제8조(정기회의와 임시회의) ① 본회의 정기운영위원회의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본회의 장이 소집한다.
② 본회의 운영위원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15일 이내에 종목단체의 장이 개최하여야 한다.
1.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
2. 재적위원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
3.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
4. 제24조 제4항 제3호의 보고를 위해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

제9조(위원장) 본회의 회장은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이 된다.

제10조(의사 및 의결정족수) 운영위원회는 이 규정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적위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하고, 출석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11조(위원의 불신임) ① 운영위원회는 본회의 임원에 대하여 부분적 또는 전체적으로 해임을 의결할 수 있다.
② 제1항에 따라 임원 전원을 해임할 경우에는 임원의 임기 경과와 관계없이 해임할 수 있으며, 일부 임원을 해임할 경우에는 해당 임원이 선출된 날부터 만 1년이 경과

해야 한다.
③ 해임안은 재적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발의되고, 재적위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④ 해임안이 의결되었을 때에는 해당 임원은 즉시 해임된다.

제12조(운영위원회 의결 제척사유) 위원장 또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.

1. 임원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
2.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써 자신과 종목단체의 이해가 상반될 때

제13조(운영위원회의 운영) 이 규정 외 본회의 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본회의 규정을 준용한다.

제 4 장 이 사 회

제14조(이사회의 구성 및 기능) ① 본회의 이사회는 회장, 부회장 및 이사로 구성한다.
② 본회의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.

1. 사업계획 및 예산에 관한 사항
2. 사업결과 및 결산에 관한 사항
3. 규정(규약)의 제정 및 개정
4. 기본재산의 편입 및 처분에 관한 사항
5.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
6.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
7. 총회 안건 상정에 관한 사항
8. 기타 중요사항

③ 이사회에서 심의한 안건 중 부결된 사항은 총회에 안건으로 상정할 수 없다.

제15조(이사회의 소집) ① 본회의 회장은 필요에 따라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.
②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5일 전까지 안건 · 일시 · 장소를 명시하여 서면(전자문서를 포함한다)으로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 다만, 긴급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.
③ 본회의 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10일

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.

1.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목적을 제시하고 소집을 요구한 때
2. 제24조 제4항 제3호의 보고를 위해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

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이사회가 소집되지 않은 경우, 소집을 요구한 이사 또는 감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. 다만. 이사가 이사회를 소집한 경우에는 이사 중 연장자가 이사회의 소집권자가 되고, 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로 출석이사 중에서 의장을 선출한다.
⑤ 이사회는 미리 통지된 안건에 한하여서만 의결할 수 있다. 다만, 출석이사 전원의 찬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외의 안건을 상정하여 의결할 수 있다.
⑥ 이사는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 등으로 자신과 본회의 이해가 상반될 때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.

제16조(의사 및 의결정족수) 이사회는 이 규정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이사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다만, 가부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.

제17조(긴급한 업무의 처리) ① 본회의 회장은 그 내용이 경미하거나 또는 긴급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집행할 수 있으며, 차기 이사회에 이를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.
② 본회의 회장은 부의사항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또는 긴급하다고 인정 될 때에는 서면결의로서 이사회의 의결을 대신할 수 있다. 다만, 재적이사 과반수가 정식으로 이사회에 회부할 것을 요구할 때는 이에 따른다.

제 5 장 임 원

제18조(임원) ①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.

1.단체의 장(이하 “회장”이라 한다) 1명
2. 약간의 부회장, 이사, 감사를 둔다

② 본회의 임원은 본 회 해당 단체에서 다른 임원의 직위를 겸직할 수 없다.

제19조(회장의 선출) ① 회장은 회장선출기구에서 선출한다.
② 회장선출기구에서 회장을 선출하는 경우 본회의 규약 및 남원시체육회 회장 선거관리 규정을 준용하여야 한다
③ 회장선거 후보자는 등록시에 기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.

제20조(선거의 중립성) ① 본회는 선거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소재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.

제21조(회장의 사고 또는 궐위시 직무대행) ① 회장이 일시적인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회장이 지명하는 부회장 또는 부회장 중 연장자 순으로 직무를 대행한다.
② 회장이 1월 이상 사고로 인하여 직무수행을 할 수 없을 때에는 부회장 중 이사회에서 선출된 자가 직무를 대행한다.
③ 회장이 궐위된 경우 잔여임기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자가 본회의 인준을 받아 직무를 대행하며, 잔여임기가 1년 이상인 경우에는 60일 이내에 회장을 새로 선출하여야 한다.
④ 제1항 대행자는 제2항의 사유가 생긴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제2항의 대행자를 선출하기 위한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.
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직무대행자는 통상적 사무를 수행하며, 정책의 전환, 인사의 이동 등 현상유지의 범위를 벗어난 사무를 처리할 수 없다.

제22조(부회장, 이사 및 감사의 선임) ① 본회의 부회장 및 이사는 회장이 추천한 자 중에서 총회에서 선임한다. 단, 대의원총회의 의결로 선임권한을 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. 이 경우 차기 총회에서 선임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.
② 임원 구성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이 반드시 충족되어야 한다.

1. 동일 대학 출신자 및 재직자가 재적임원수의 20%를 초과할 수 없다.
2. 종목단체 선수위원회에서 추천한 국가대표선수 출신자가 재적 임원수의 20%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. 단, 국가대표가 없는 종목은 선수출신자로 이를 대신하며, 기존 도종목별연합회 중 본회 가맹경기단체와 통합하지 않은 단체는 예외로 한다.
3. 비경기인(학계, 언론계, 법조계 등)은 재적임원수의 20%이상 포함할 수 있다.
4. 여성이 재적 임원수의 30%이상 포함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5. 생활체육관계자(선수 출신은 제외한다)가 재적임원수의 30%이상 포함되어야 한다. 다만, 기존 전라북도체육회 가맹경기단체 중 도종목별연합회와 통합하지 않은 단체는 예외로 한다.
6. 각 호의 요건변경이 필요한 종목단체는 변경내용을 본회의 승인을 득한 후 적용한다.

③ 감사는 총회에서 선임하며, 행정감사 1명, 회계감사 1명(회계 관련 자격을 가진 자로 한다)을 선임하여야 한다.
④ 부회장과 이사의 결원이 있을 때에는 회장이 추천한 자를 이사회에서 보선하되

차기 총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.
⑤ 본회의 임원은 구비서류를 갖추어 시체육회의 인준을 받아 취임한다.
⑥ 본회는 구비서류가 갖추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인준할 수 없으며,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에 신원사항을 조회할 수 있다.
⑦ 종목단체의 대의원은 임원에 선임될 수 있으나 재적이사(회장, 부회장 포함)의 8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.

제23조(동일인의 겸직제한) ① 동일인이 다른 시종목단체의 대의원 또는 임원을 겸할 수 없다. 다만, 근대5종, 바이애슬론, 트라이애슬론, 루지・봅슬레이・스켈레톤 및 수중・핀수영의 경우 해당 종목의 육성에 필요하다고 시체육회의 대의원총회가 의결한 경우에 다른 회원단체의 임원을 선임할 수 있다.
② 동일인이 다른 회원단체의 회장선출에 후보자가 되려는 경우에는 후보자 등록신청 전까지 현재 소속 회원단체의 임원직을 사임하여야 한다.
③ 본회의 임원 중 회계감사는 다른 회원단체의 감사를 겸임할 수 있다.

제24조(임원의 직무) ①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.
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, 회장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수행이 곤란할 때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.
③ 이사는 이사회를 구성하고 이사회에 출석하여 그 직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, 회장 및 이사회가 위임한 사항을 처리한다.
④ 감사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본회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
2.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를 감사하는 일
3. 재산상황 또는 업무집행에 관하여 부정 또는 부당한 것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이사회, 총회 또는 본회(정회원단체와 준회원단체에 한 한다)에게 보고하는 일
4.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이사회 또는 총회를 소집하는 일

⑤ 회장을 비롯한 비상근 임원에게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. 다만,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는 실비로 지급할 수 있다.
⑥ 본회의 임원이 회원단체(본회, 다른 회원단체를 포함한다)의 운영과 관련된 범죄사실로 기소되었을 경우 그 직무가 정지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1. 기소된 범죄사실의 법정형이 벌금형만 있는 경우
2. 약식명령이 청구된 경우

3. 과실범으로 기소된 경우

⑦ 본회의 임원이 회원단체(본회, 다른 회원단체를 포함한다)의 운영과 관련된 비위의 사유로 본회의 감사처분을 받아 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그 직무가 정지된다.

⑧ 본회의 임원이 해당 단체의 운영 이외의 범죄사실로 구속되었을 경우 그 직무가 정지된다.

⑨ 본회의 임원 또는 체육단체를 대표하는 자로서 종목단체의 임원이 된 자가 해당 단체에서 직무가 정지되었을 경우 도종목단체 임원으로서의 직무도 당연 정지된다.

제25조(임원의 임기) ① 회장을 포함한 이사의 임기는 4년으로 하되, 사정에 따라 2년으로도 할 수 있으며,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1회에 한하여 중임(중임 횟수 산정시 다른 종목단체의 임원의 경력도 포함한다)할 수 있다.

제26조(임원의 결격사유)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본회의 임원이 될 수 없다.

1.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(종목단체의 회장으로 한정한다)
2.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
3.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
4.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
5.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6.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
7.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
8. 대한체육회, 중앙종목단체, 본회, 도종목단체, 대한장애인체육회, 시·군체육회, 시·군종목단체 또는 도장애인체육회 등 체육단체에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「형법」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미만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자
9. 대한체육회, 중앙종목단체, 본회, 도종목단체, 대한장애인체육회, 시체육회, 시종목단체 또는 도장애인체육회 등 체육단체에서 1년 이상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고 징계가 만료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(단, 승부조작, 폭력·성폭력, 횡령, 배임, 편파판정으로 본회 및 대한체육회, 중앙종목단체, 본회, 도종목단체, 대한장애인체육회, 시체육회, 시종목단체 또는 도장애인체육회 등에서 1년 이상의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영구히 임원에 선임

될 수 없다)

제27조(임원의 사임 및 해임) ① 이사 및 감사가 사임할 경우에는 회장 또는 그 직무대행자에게 사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, 회장이 사임할 경우에는 사무처에 사직서를 제출해야 한다. 이사, 감사 또는 회장이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제출과 동시에 사임한 것으로 본다.
② 본회에 대한 관리단체 지정이 본회의 스포츠공정위원회 또는 이사회 안건으로서 통지된 경우, 그 시점부터 관리단체 지정 절차가 종료될 때까지는 임원 사임의 효력이 발생되지 아니한다.
③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퇴임한 것으로 본다.

1. 본회 규약 제31조 제2항에 따라 본회로부터 인준이 취소 또는 철회된 자
2. 제26조에 해당하는 때
3. 본회의 임원 또는 체육단체를 대표하는 자가 해당 단체에서 해임되거나 사임하는 경우

제28조(임원인준 등) ① 본회의 임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목단체의 인준동의서를 첨부하여 시체육회에 인준을 받아야 한다.
② 시체육회는 제1항에 따른 인준동의 여부를 30일 이내에 회신하여야 한다.
③ 시체육회의 사무국장은 이사회의 위임을 받아 시종목단체의 임원 인준을 우선 승인할 수 있으며, 차기 이사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.

제 6 장　규정 승인 사항

제29조(규정 승인) ① 본회는 시체육회가 정한 규정에 따라 시회원단체의 규정(규약)을 제정하여야 하며, 이 경우 도회원단체와 협의를 거쳐 시체육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 개정 시에도 이와 같다.
② 시체육회는 회원단체가 규정(규약)의 제・개정에 대하여 도종목단체의 협의를 거치지 않은 경우, 승인할 수 없다.

제30조(이의신청 및 감사) ① 본회는 도회원단체에 규약승인 및 임원 승인사항을 즉시 보고하여야 하며, 도회원단체는 보고를 받은 사항 중 시정할 사항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관련 사실을 적시하여 해당 시체육회에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.

제31조(종목단체에 대한 관리단체 지정 요구) ① 본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회원단체에 대한 관리단체 지정을 본회에 요구할 수 있다. 이 경우 회원단체는 본회의 요구에 따라야 한다.

1. 승부조작 및 단체운영 관련 범죄사실로 다수의 임직원이 기소되는 등 정상적인 조직운영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
2. 본회 감사결과 관리단체 지정의 처분요구가 있을 경우

② 제1항에 따른 관리단체 지정은 본회 규정 제9조에 따른 관리단체 지정의 효력과 동일하며, 본회와 협의하여 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.

제 7 장 각종 위원회

제32조(각종 위원회의 설치) ① 본회는 사업수행과 목적 달성을 위하여 이사회의 자문기구로 대회위원회, 심판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를 설치한다.

② 본회는 필요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로 제1항 이외의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.

③ 위원회 위원은 다른 위원회 위원을 겸임할 수 없으며, 동일 대학 출신자 및 재직자가 재적위원수의 20%를 초과할 수 없다.

④ 심판위원회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하여야 한다.

1. 경기인 출신자가 재적위원수의 50%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.
2.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으로 선출하고, 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.

⑤ 본회의 등록선수는 경기력향상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다.

⑥ 제1항의 각종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본회의 해당 위원회의 규정을 준용하여 본회가 별도로 정한다.

제33조(스포츠공정위원회) ① 본회는 해당 회원단체의 제규정 관리, 표창 또는 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·의결하기 위하여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설치한다.

② 스포츠공정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사람 중에서 본회와 협의하여 회장이 위촉하며, 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한다.

1. 판사·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
2. 스포츠 또는 법률관련 분야 학문을 전공하고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
3. 스포츠 분야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

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스포츠공정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.

1. 대한체육회, 중앙종목단체, 본회, 도회원단체, 시·군체육회, 시·군회원단체,

대한장애인체육회 또는 도장애인종목단체 등 체육단체로부터 징계를 받은 적이 있는 자

2. 대한체육회, 중앙종목단체, 본회, 도회원단체, 시·군체육회, 시·군회원단체, 대한장애인체육회 또는 도장애인종목단체 등 체육단체에서 임직원으로 근무 중인 자

④ 이 규정 외에 스포츠공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도종목단체가 본회의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을 준용하여 따로 정한다.

제34조(위원회의 운영 등) ① 제26조에 따른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회원단체에 설치하는 제37조 및 제38조의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.

② 위원회의 위원에게는 보수·수당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다. 다만, 업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.

③ 위원회의 위원은 15명 이내(위원장, 부위원장 포함)로 구성하여야 한다.

제 8 장 재산 및 회계

제35조(재산의 구분) ① 본회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산은 기본재산으로 한다.

1. 설립당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
2. 부동산
3. 기금
4. 운영재산 중 이사회의 의결로 기본재산에 편입되는 재산
5. 이익잉여금 중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기본재산에 편입되는 재산

② 제1항 각 호 이외의 재산은 운영재산으로 한다.

③ 기부금품은 기부하는 자의 지정에 따른다.

④ 기본재산은 연 1회 그 목록을 작성하여 본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
제36조(재원) 본회가 제4조의 사업을 수행하고 회원단체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재원은 다음과 같다.

1. 기본재산으로부터 생기는 과실금
2. 기부금 및 찬조금
3. 사업수익금
4.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
5. 공공단체의 지원금 및 보조금

6. 기타 수입금(선수 등록비 또는 동호인 등록비 등)

제37조(잉여금의 처리) 본회의 매 회계연도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 순으로 처리한다.

1. 이월결손금의 보전
2. 차기 회계연도 목적사업비로 이월
3. 기본재산으로 편입시키기 위한 적립

제38조(재산의 관리) ① 본회의 기본재산을 매도, 증여, 임대, 교환 또는 담보로 제공하고자 할 때, 본회가 재정적·업무적 부담을 하거나 권리를 포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본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 차입금(해당 회계연도 내의 수입을 상환하는 일시 차입금을 제외한다)에 대하여도 이와 같다.
② 본회가 재산을 취득할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본회의 재산으로 편입 조치하여야 한다.
③ 본회의 재산관리에 있어 이 규정에 정한 사항 이외의 것은「국유재산법」및「물품관리법」의 일반적인 관리의무 규정을 준용한다.

제39조(재산의 대여 및 사용) 본회의 재산은 남원시 또는 공공단체를 제외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이를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으며, 그 외의 자에 대한 대여 및 사용의 경우도 상당한 대가 없이는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.

1. 본회 및 대한체육회, 중앙종목단체, 도종목단체, 시체육회 및 시종목단체의 임직원
2. 도종목단체의 임직원과「민법」제777조의 규정에 정한 친족관계에 있는 자 또는 이에 해당하는 자가 임원으로 있는 법인(비법인 단체를 포함한다)
3. 기타 본회 및 대한체육회, 중앙종목단체, 도종목단체, 시체육회 및 시종목단체 등과 재산상 이해관계가 있는 자

제40조(회계연도) 본회의 회계연도는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연도에 따른다.

제41조(예산 편성 및 결산) ① 본회는 매 회계연도 시작 전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편성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, 중요 사업계획 및 예산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② 매 회계연도 종료 후 1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 의결을 거쳐 승인을 얻어야 한다.
③ 본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회장이 결산서(재산증감사유서와 감사의

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)를 작성하여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.

제42조(회계감사 등) ① 본회의 회계감사는 연 1회 실시한다.
② 본회의 회계처리는 복식부기를 원칙으로 하고, 재산 및 회계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본회의 규정을 준용하여 회원단체가 별도로 정한다.

제 9 장 사 무 국

제43조(사무국) ① 본회는 사무국을 두며, 사무국에는 사무국장을 둔다.
② 사무국장(본회의 임원을 겸직할 수 없다)은 회장의 지휘·감독을 받아 사무국의 업무를 총괄 한다
③ 회장을 제외한 임원(감사를 제외한다)은 사무국 운영과 관련하여 사무국장이 위법 또는 부당하게 사무를 처리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거나 이사회의 의결이 없는 한 사무국의 통상적인 사무에 대하여 관여할 수 없다.

제44조(사무국의 운영 등) 본회는 사무국 구성의 규정을 준용하여 별도로 정하여야 하며, 별도의 규정 제정 전에 발생한 사안에 대해서는 본회 규정을 준용하여 처리한다.

제 10 장 보 칙

제45조(해산) ① 본회는 재적임원 4분의 3 이상의 해산결의로 해산한다.

제46조(규정 변경) ① 본회의 규약은 시체육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유효하며, 이를 변경할 때에도 이와 같다.
② 본회가 규정(규약)을 보고받은 후 이에 대한 개·수정 및 삽입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는 이에 대한 반영을 요구할 수 있으며, 본회는 이에 따라야 한다.

제47조(규정 제·개정 등) ① 본회는 이 규정에 따라 규정(규약)을 제·개정하여야 한다.

제48조(규정의 해석) ① 이 규정은 도회원단체의 규정(규약)에 우선하며, 종목단체 규정(규약)을 이 규정에 맞게 변경하지 아니하여 도회원단체의 규정(규약)과 이 규정이 상이할 경우에는 반드시 이 규정을 따라야 한다.
③ 본회가 본회의 규정(규약) 및 기타 규정을 준용할 수 없거나 해석상 불분명한 사

항은 본회가 정한 바에 따른다.

제49조(제한사항) 본회가 본회의 규정(규약) 및 이 규정에서 규정한 사항이나 본회가 지시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본회는 규정(규약) 제7조에서 정한 권리사항을 제한(정회원단체의 경우, 임원 자격의 정지를 포함한다)하거나 본회의 지원금 또는 지원사항을 중단, 회수, 감액 등의 불이익 처분을 할 수 있다.

제50조(경영공시) ① 본회는 경영의 투명성을 위하여 경영에 관한 중요 정보를 시민이 알 수 있도록 공시하여야 한다.
② 제1항의 공시항목은 이사회 및 총회 회의록, 예산집행내역, 외부평가, 감사결과와 그 외 종목단체의 장이 정한 것으로 한다.

부 칙 (제정 2018. .)

제1조 (시행일)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.